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06월 05일

경기도지사

업체명	법인등록번호	대표자	주소	건설업종	처분		처분사유	처분근거
					일시	내용		
(주)티에스종합건설	115411-0035420	김상도	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306-32, 701호, 702호 (녹양동, 키움프라자)	토목건축공사업	2020.6.5.	과태료부과 (2,750,000원)	건설공사대장 미통보(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마리 50-3 공장신축공사 외 3건)	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
강호종합건설(주)	135811-0136341	유해봉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93 (곡반정동) 리무진빌딩 2층	건축공사업	2020.6.5.	과태료부과 (3,000,000원)	건설공사대장 미통보(시화MTV R1-18-2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외 2건)	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
성산프라임건설(주)	194911-0017431	오창근	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로 30, 204호 (태영프라자)	건축공사업	2020.6.5.	과태료부과 (2,000,000원)	건설공사대장 미통보(진벌리 씨멘씨코리아 공장 신축공사 외 3건)	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

※ 문의사항이 있을 시 경기도청 건설정책과(031-8030-389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